

변경 대비표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(주식)
- 변경 사항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
- 효력발생일: 2024. 8. 29.
-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온라인슈퍼(S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온라인슈퍼(S) :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6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나. 종류형 구조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

		<p>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	<p><u>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6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</p> <p>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</p>	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</p>	<p>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</u></p>	<p>온라인슈퍼(S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</u></p>

		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<u>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 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. 매입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2) 종류별 매입자격 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⑭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	2) 종류별 매입자격 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⑭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</u>

			<p>며, <u>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--	--	--	--